

시 민

문서번호	사회적경제과-2836
결재일자	2013.3.11.
공개여부	대시민공개
방침번호	

주무관	사회적기업육성팀장	사회적경제과장	고용노동정책관	경제진흥실장
협 조				

함께 만드는 서울, 함께 누리는 서울

2013년도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및 재정지원사업 계획

2013. 2.

서울특별시
[경제진흥실 사회적경제과]

사전 검토항목

∴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'무 ■' 표시하시기 바랍니다.

검토항목	검 토 여 부 (■ 표시)
시 민 참 여 고 려 사 항	● 시 민 : 유 <input type="checkbox"/> () 무 ■
	● 이 해 당 사 자 : 유 ■ ((예비)사회적기업) 무 <input type="checkbox"/>
	● 전 문 가 : 유 ■ (심사위원회) 무 <input type="checkbox"/>
	● 옴 브 즈 만 : 유 <input type="checkbox"/> () 무 ■
법 령 및 기 타 고 려 사 항	● 법 령 규 정 : 교통 <input type="checkbox"/> 환경 <input type="checkbox"/> 재해 <input type="checkbox"/> 기타 ■ (사회적기업육성법) 무 <input type="checkbox"/>
	● 기 타 사 항 : 고용효과 ■ 노동인지 <input type="checkbox"/> 균형인지 <input type="checkbox"/> 홍보 <input type="checkbox"/> 취약계층 ■ 성인지 <input type="checkbox"/> 장애인 <input type="checkbox"/> 디자인 <input type="checkbox"/> 갈등발생 가능성 <input type="checkbox"/> 유지관리 비용 <input type="checkbox"/> 무 ■
타 자 원 의 활 용	● 중 앙 부 처 : 유 ■ (고용노동부(청)) 무 <input type="checkbox"/>
	● 민 간 단 체 : 유 ■ (서울권역 지원기관) 무 <input type="checkbox"/>
	● 기 업 : 유 <input type="checkbox"/> () 무 ■
관 계 기 관 및 단 체 협 의	● 관 계 기 관 : 유 ■ (고용노동부(청), 자치구) 무 <input type="checkbox"/>
	● 민 간 단 체 : 유 ■ (서울권역 지원기관) 무 <input type="checkbox"/>
	● 시 산 하 기 관 : 유 <input type="checkbox"/> () 무 ■

2013년도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및 재정지원사업 계획

2013년도 고용노동부 (예비)사회적기업 재정지원사업 업무매뉴얼에 따라 우리시의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및 재정지원사업에 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(예비)사회적기업을 적극 발굴·육성코자 함.

I 추진배경 및 근거

□ 추진배경

- 지역 풀뿌리형 사회적기업 육성을 위해 '10.8월 지역형 예비 사회적기업 지정제도가 도입되고
- 고용노동부의 각 재정지원사업이 자치단체에 위임되어 국비와 지방비 매칭(8:2)으로 추진하게 됨.

* '10년 사업개발비 지원사업, '11년 (예비)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, '12년 전문인력 지원사업

□ 추진근거

- 2013년도 (예비)사회적기업 재정지원사업 업무매뉴얼
- 사회적기업 육성법, 동법 시행령, 동법 시행규칙
- 서울특별시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
- 국가재정법 및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

II (예비)사회적기업 현황 및 '12년 추진실적

□ 지정 현황(2012.12.31 기준)

○ (예비)사회적기업 지정(인증)현황

(단위 : 개)

합계	인증사회적기업	예비사회적기업			비고
		계	지역형	부처형	
270	174	96	73	23	

※ 서울형 사회적기업 411개는 현황에서 제외하였으며, '12.12.31기준 누계실적임.

□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실적('12년)

○ 신청기업 : 272개 기업(1차 167, 2차 105)

○ 지정기업 : 67개 기업(1차 35, 2차 32)

※ 2012년 지정일자 : 제1차 지정('12.06.07), 제2차 지정('12.12.01)

□ 재정지원사업 추진실적('12년)

○ 지원실적 : 총248개 기업, 8,182백만원 지원

(단위 : 개,명,백만원)

구분	계			인증			예비		
	기관 수	인원 수	지원 금액	기관 수	인원 수	지원 금액	기관 수	인원 수	지원 금액
계	248	1,010	8,182	185	783	6,502	63	227	1,680
일자리 창출사업	87	942	6,133	58	715	4,908	29	227	1,225
전문인력 지원	45	68	540	45	68	540	-	-	-
사업개발비 지원	116	-	1,509	82	-	1,054	34	-	455

※ 서울형 사회적기업은 제외, 자치단체 지역특화사업 총10개 자치구 440백만원 별도 지원

□ 추진성과('12년)

○ 67개 예비사회적기업 지정, 1,010여명 일자리 창출 효과 거양

※ 세부 추진실적 : [붙임] 참조

Ⅲ

2013년 추진방향 및 주요내용

□ 추진목표 : 318여개 기업, 1,180여명 일자리 창출

○ 기존(248개 기업, 1,010명), 신규(70여개 기업, 170여명)

□ 추진방향

○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을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일원화

- '12년부터 서울형사회적기업 신규 지정 중단(서울형,지역형→지역형)

※ 기존에 지정된 서울형사회적기업은 최대 지원기간 내에서 계속 지원

○ 인건비 중심의 직접 지원보다 간접지원 방식으로 추진

- 예비사회적기업 지정과 일자리창출사업을 구분, 별도 공모

- 인건비 지원규모를 축소하고 사업개발비 지원규모 확대

※ 2013년도 예산 국회심의회 일자리창출 사업비 감액, 사업개발비 증액

□ 주요 사업내용 - 고용부 지침

○ (예비)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사업

- (일반인력) 최저임금 수준의 인건비 및 사업주 부담 사회보험료 지원

* 1인당 월 1,107천원 한도, 기업당 최대 5년간 연차별 차등 지원

- (전문인력) (예비)사회적기업이 고용한 인력의 인건비 지원

* 월 200만원 한도, 사회적기업 최대 3년, 예비사회적기업 최대 2년 지원

○ 사업개발비 지원사업

① (예비)사회적기업 공모사업

- 사회적기업(1억원), 예비사회적기업(5천만원) 한도 지원

② 자치단체 지역 특화사업

- 광역자치단체(2억원), 기초자치단체(8천만원) 한도 지원

< 연간 공모횟수 >

구분	예비지정	일자리창출	전문인력	사업개발비	자치단체지역특화
공모횟수	연 2회	연 1회	수시접수	연 1회	연 1회
공모시기	상,하반기	하반기	-	상반기	상반기

※ 단 예산규모 등을 고려하여 사업별 공모시기 조정 가능

□ 예상되는 문제점 및 해결방안

○ 일자리 창출(전문인력 포함) 사업비 부족

- '13년도 국고보조금 교부예산 중 일자리 창출사업 예산의 감소로 신규 일자리창출사업 공모 및 전문인력 지원사업 실시 곤란
- '13년도 예산 국회심의회 인건비 감액(△38억원), 사업개발비 증액(6억원↑)
 < (예비)사회적기업 재정지원 예산(국비보조금) 증감현황 >
 (단위 : 천원)

구분	2012년	2013년	증감	전년대비
계	(×10,111,000) 12,514,000	(×7,428,000) 9,285,000	(×2,683,000) ▲ 3,229,000	73.5%
일자리창출	(×8,251,000) 10,314,000	(×5,194,000) 6,492,000	(×3,057,000) ▲ 3,822,000	62.9%
사업개발비	(×1,760,000) 2,200,000	(×2,234,000) 2,793,000	(×474,000) 593,000	126.9%

- ⇒ 기존 일자리 창출사업 참여기업의 지원기간 연장 재심사를 통해 기 배정 인원의 50% 이내로 감축하여 일자리 창출 예산부족 해소
- ▷ 일자리 창출사업 신규 공모 및 지원인원 확정 여부는 재심사 실시 이후 배정인원 감축 규모를 고려하여 결정
- < 배정인원 감축시 신규 일자리 창출 예산 확보가능액 >
 (단위 : 천원)

총예산액 (A)	기 지원액 (B)	재심사 이후 소요예산(C)		소요액계 (B+C)	예산확보 가능액 {A-(B+C)}
		감축비율	소요예산		
6,492,000	4,394,000	45% 감축시(C')	2,049,551	6,443,551	48,449
		50% 감축시(C'')	1,863,228	6,257,228	234,772

※ 일자리창출사업 예산 부족으로 전문인력은 기존 지원기업을 대상으로 4월까지 지원하고 추후 예산 사정을 고려하여 계속지원 여부 결정

○ 사업개발비 지원한도 조정

- 고용부 지침상 '13년 사업개발비 지원한도가 상향되었으나,
 ※ 인증사회적기업 1억원('12년 7천만원), 예비사회적기업 5천만원('12년 3천만원)
- 서울 소재 사회적기업의 수가 타시·도에 비해 많은 실정을 감안하여 다수의 기업에 지원혜택을 부여하기 위해 **우리시 지원한도 조정 필요**

- ⇒ 고용노동부 지침상 지원한도(인증 1억원, 예비 5천만원 이내)
보다 하향 조정하여 예산범위 내에서 보다 많은 기업 지원
▷ '13년 사업개발비 서울시 자체 지원한도 기준 조정

· 인증사회적기업 5천만원 한도, 예비사회적기업 3천만원 한도

-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및 재정지원 사업별 심사위원회 구성 필요
- '13년 고용부 지침상의 개별 사업에 대한 심사위원회와 우리시 희망경제위원회 사회적경제 분과위원회의 위원 구성이 다름

< 고용노동부 지침상 위원회 구성내역 예시 >

- ※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: 고용부 관리 후보군 중 민간전문가를 2인 이상 포함하여 10인 내외로 구성토록 규정
※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: 고용부 지침상 시 국장급(3급)이상 공무원이 위원장, 서울고용센터 포함 10인 이상으로 구성

- ⇒ 사업별 심사위원회 구성 및 구체적인 심사기준 등은 지침상의 요건이 충족되도록 별도로 사업별 세부 방침을 수립하여 추진

○ 연간 (재)심사일정 조정 운영

- 매년 예비사회적기업 신규 지정 및 일자리 창출사업에 대한 신규 및 재심사 등으로 연간 심사일정이 과도하게 증가하여 이에 대한 대책 필요
※ '13년 예비사회적기업 관련 심사위원회 개최 횟수 : 총12회
-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6회(신규 2회, 재심사 4회), 일자리창출사업 심사 4회(신규 1회, 재심사 3회), 기타(사업개발비, 자치단체 특화사업) 2회
※ 기타 혁신형사회적기업 2회(신규1, 재심사1), 우수사회적기업 심사 등

- ⇒ 심사일정이 특정 기간 동안 과도하게 집중되지 않도록 (재)심사 대상 규모 및 심사시기를 적절히 월별로 안배하여 실시

《 2013년도 주요 변경내용 》

□ 연차별 지원비율 및 인건비 산정방식 변경

○ 인증사회적기업의 연차별 지원비율 변경

기존			변경		
1년차	2년차	3년차	1년차	2년차	3년차
90%	80%	70%	90%	70%	50%

※ (예비)사회적기업의 인건비 지원 의존도를 낮추고 자립성을 고취하기 위해
 '13년 3월부터 인건비 기업 자부담율 상향 조정

○ 일자리창출사업 참여기업 인건비 산정방식

- 기존 : {(참여근로자의 실제근로일×당해연도 시간급 최저임금)+4대보험료
 사업주부담분}×연차별 지원비율(100%~70%)
- 변경 : 최저임금수준 인건비+4대보험료 사업주부담분(9%)×연차별 지원비율
 (100%~50%)

※ '13년도 고용노동부 고시 최저시급 : 4,860원('12년도 기준 최저시급 4,580원)

※ 새롭게 변경된 연차별 지원비율 및 인건비 산정 방식은 '13년 3월부터 적용

□ 전문인력 지원사업 신청대상 확대

○ (기존)인증사회적기업→(변경)인증사회적기업, 예비사회적기업

※ 기존에 전문인력 인건비를 100% 시비로 지원중인 서울형사회적기업은 제외

□ 사회적기업 사이버교육 수강 의무화

- 일자리 창출사업 및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신청시 (일자리 창출사업은
 재심사 포함) 한국사회적기업 진흥원에서 실시하는 (예비)사회적기업
 사이버교육 수강 의무화

IV 2013년 세무 추진계획

1 2013년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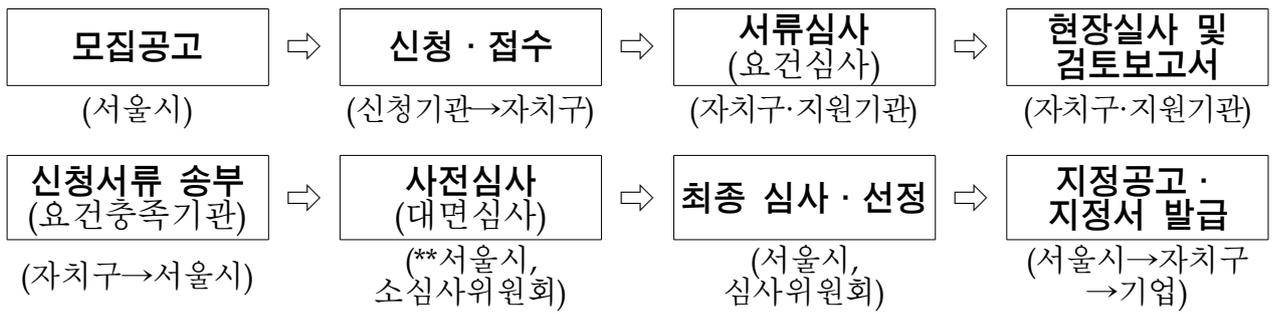
□ 사업개요

- 참여대상 : 민법상 법인·조합, 상법상 회사, 비영리민간단체 등
 - ※ '12.12.01부터 협동조합, 협동조합연합회, 사회적협동조합, 사회적협동조합 연합회 추가
- 지정유형 : 일자리제공형, 사회서비스제공형, 지역사회공헌형, 혼합형, 기타형
- 지정기간 : 1년 (재심사를 통해 1년씩 지정연장 가능, 최대 3년)
- 심사기준
 - 지정심사 : 사업내용의 우수성, 기업의 건실성, 지속적 고용창출 가능성, 인증가능성 등
 - 재심사 : 계획 이행여부, 지정요건의 유지여부, 지정기간 내에 지정변경이 있었던 기업은 변경내용 등 반영
- 지정규모 : 제한없음
- 지정혜택 : 재정지원사업 참여자격 부여, 공공기관 우선구매 등

□ 추진일정

- 재심사·지정 : '11년 제1차('13. 3~4월), '12년 제1차('13. 5~6월), '11년 제2차('13. 8~9월), '12년 제2차('13.11~12월)
- 신규공모·지정 : '13년 제1차('13.3~5월), '13년 제2차('13.10~12월)

<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절차 >



1 일자리 창출사업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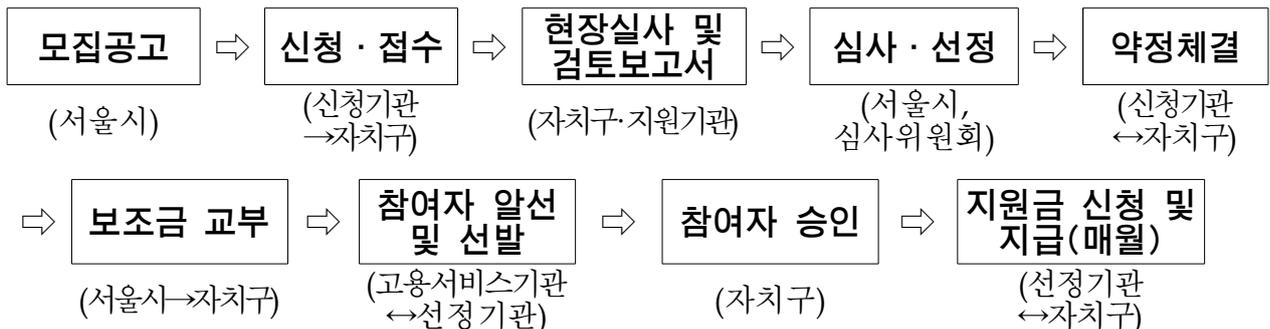
□ 사업개요

- 참여대상 : 인증사회적기업 및 예비사회적기업(지역형, 부처형)
 - ※ '13년부터 일자리창출사업 신청기업은 사회적기업 사이버교육 이수 의무화
- 지원기간 : 1년(매년 재심사를 통해 1년씩 연장 가능)
 - ※ 최대 지원기간 : 5년(인증사회적기업 3년, 예비사회적기업 2년)
- 지원내용 : 최저임금 수준 인건비 + 4대보험료 사업주부담분 일부
 - 지원기준 : 1인당 1,107천원/월, 기업당 1인 이상 50인 이하
 - ※ 산출내역 : 4,860원(최저임금) × 209시간(월평균근로시간) × 1.09(4대보험료일부)
 - 연차별 지원비율
 - ┌ 인증 : 1년차 90%, 2년차 80%, 3년차 70%
 - └ 예비 : 1년차 100%, 2년차 90%
 - ※ '13년 3월부터 인증기업 지원비율 변경 : 90%(1년차), 70%(2년차), 50%(3년차)
- 예산액 : 6,492백만원(국 5,194, 시 1,298) ※ 국비 80%, 시비 20%

□ 추진일정

- 재심사·선정 : '11년 제1차('13. 3~4월), '12년 제1차('13. 5~6월), '11년 제2차('13. 8~9월)
- 신규공모·지정 : '13년 제1차('13. 9~10월)

< 일자리창출사업 추진절차 >



2 전문인력 지원사업

□ 사업개요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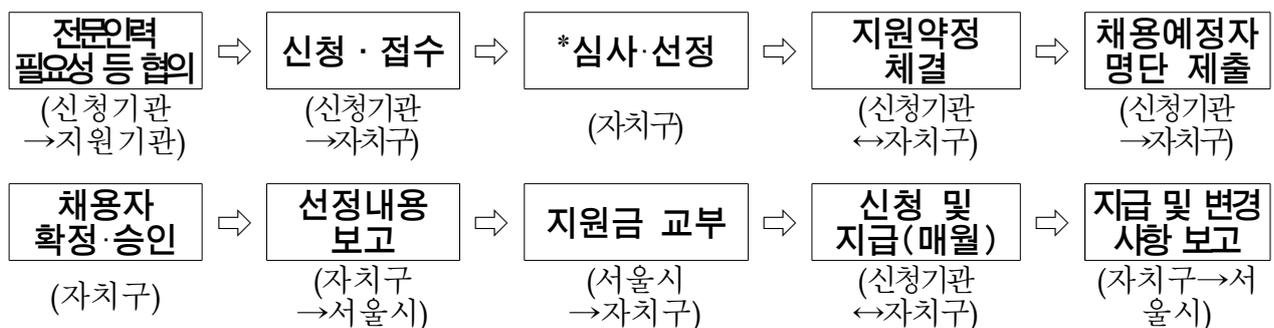
- 지원대상 : (예비)사회적기업 중 전문인력을 신규로 채용하는 기업
- 지원인원 : 인증사회적기업은 3인(유급근로자수 50인 미만인 기업은 2인), 예비사회적기업은 1인(상시근로자수 10인 이상인 기업)
- 접수기간 : 수시접수(지원약정 시작일 : 매월 1일)
- 지원기간 : 약정체결일로부터 12개월(매년 재심사)
 - ※ 최초 전문인력 지원시점으로부터 최대 5년간 지원가능 (예비사회적기업은 지정기간 내 2년간, 인증사회적기업은 인증 후 최초 지원일로부터 5년 이내 3년간 지원)
 - ※ (예비)사회적기업 인증(지정)이 종료 또는 취소되는 경우 종료일로부터 약정해지
- 지원금액 : 월 200만원 한도로 전문인력 인건비 일부 지원
- 신청기관 자부담율
 - ┌ 인증 : 20%(1년차), 30%(2년차), 50%(3년차)
 - └ 예비 : 20%(1년차), 30%(2년차)
 - ※ 지원금액에 4대보험료는 포함되지 않음
- 부담비율 : 국비 80%, 시비 20%
- 예산액 : '13년은 별도 예산없이 일자리 창출사업 예산 활용

□ 추진일정

- '13년 연중 수시 : 전문인력 신청·접수 및 선정

※ 일자리창출사업 예산 부족으로 전문인력은 기존 지원기업을 대상으로 4월까지 지원하고 추후 예산 사정을 고려하여 계속지원 여부 결정

< 전문인력 지원사업 추진절차 >



* 심사·선정시 자치구는 신청서를 접수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 지원기관의 검토의 견서를 참고하여 선정여부를 결정

3 사업개발비 지원사업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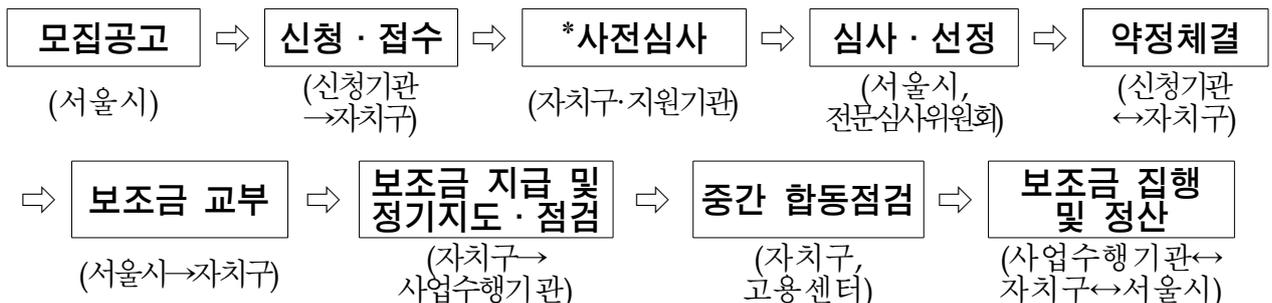
□ 사업개요

- 지원대상 : 인증사회적기업 및 예비사회적기업(지역형, 부처형)
 - ※ 서울형사회적기업은 지역형 지침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해 신청가능
 - ※ '13년부터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신청기업은 사회적기업 사이버교육 이수 의무화
- 지원한도 : 인증 5천만원, 예비 3천만원 이내 ※ 자부담 10%(부가세 별도)
 - 발전 단계 및 업종 특성에 따른 맞춤형 지원을 위해 사업개발비 사업의 지원한도 금액을 유형별·단계별 차등 지원
 - 3개 이상의 (예비)사회적기업이 공동상표·브랜드를 개발하여 이미지 개선 및 판로확대 등을 신청하는 경우 연간 1억원 한도로 지원
 - ※ 3개 이상의 기업인 경우 1개를 주관기업으로 선정, 서울시에 신청서 제출 (단, 사업장 소재지 자치구가 모두 동일한 경우 해당 자치구에 신청서류 제출)
- 최대지원기간 : 5년, 그 기간 중 최대 지원금액 3억
 - ※ '10년 이후 지원부터 최대지원기간 및 최대지원금액에 합산
- 사용용도 : 브랜드, 로고개발, 시제품 제작, 홈페이지 개발
- 예 산 액 : 2,234백만원(국 1,787, 시 447) ※ 국비 80% 사비 20%

□ 추진일정

- 공모·선정('13.4~6월), 사업 수행('13.6~12월), 1차 정기 지도·점검('13.8월), 고용노동부·자치단체 합동점검('13.9월), 2차 정기 지도·점검('13.11월), 사업 완료('13.12월)

<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추진절차 >



4 자치단체 지역특화사업

□ 사업개요

- 지원방향 : 자치구가 지역특성이 반영된 (예비)사회적기업 모델 발굴 및 육성을 위해 직접(위탁)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지원
- 지원대상 : (예비)사회적기업 육성을 위해 직접(위탁)사업을 추진하는 자치구
- 지원금액 : 자치구별 8천만원 한도
 - ※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지원대상 사업선정 및 지원금액 결정
- 사업내용 : 모델개발(T/F팀 구성·운영 수익개발 연구용역 등), 홍보(브랜드 개발 등), 판로개척(판매 지원, 공공구매 지원, 지역자원 연계 등), 기타(예비 사회적기업 발굴·육성 사업 등)
- 예산액 : 559백만원(국 447, 시 112) ※ 국비 80%, 시비 20%

□ 추진방법

- 서울시가 서울고용노동청과 공동으로 계획 수립 및 공모추진
- 자치구에서 신청시 심사를 통해 사업 선정 및 지원금액 결정
 - '12년 지역브랜드 일자리경진대회 수상(사회적기업 부문) 자치구 사업 우선 선정
 - 우수사업 신청 자치구 우선 선정(공공부문 사업위탁 모델 발굴 지원 추진 등)
 - 사회보험료 가입확대 시범사업 참여 자치구 우선 선정
 - 일반적인 사업은 가급적 선정 지양(워크숍, 포럼, 선진지 견학(국외 불가) 등)
- ※ 친목도모·외유성 행사로 판단될 경우 선정제외 (정산시 목적외 예산 사용여부 확인 철저)

□ 추진일정

- 공모 및 선정('13. 4~6월), 자치구 사업수행('13. 6~12월)

< 자치단체 지역특화사업 추진절차 >



V

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(안)

□ 구성근거

- '13년 (예비)사회적기업 재정지원사업 업무매뉴얼<고용노동부>

□ 구성요건

- 서울시 관할 고용센터, 지역내 학계, 경영계 인사, (예비)사회적기업가, 민간 전문가 등 10인 이상으로 구성하며 국장급(3급)이상 공무원이 위원장이 됨
 - ※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및 일자리창출사업 심사위원회는 개별 심사일정에 맞추어 추후 구성 예정 (반드시 사회적기업지원기관 소속 전문가를 1인 이상 포함)
 - ※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전문심사위원회는 고용노동부가 구성·관리하는 후보군 중 선정한 민간전문가를 2인 이상 포함하여 10인 내외로 별도 구성

□ 역할 및 기능

- 서울시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및 재정지원사업 참여기관 선정심사(재심사 포함)
 - 서면심사(신청기관의 제출서류, 요건심사 및 현장실사 검토보고서), 대면심사

□ 위원의 임기 및 회의개최

- 위원의 임기는 2년 원칙(연임 가능),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및 재정 지원사업 심사시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·개최
 -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최,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
 - 심사위원 중 신청기관의 대표 또는 임원이 있거나 그 친족이 있는 등 공정한 심사를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는 해당위원을 심사에서 배제

□ 수당 등 지원

-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·여비 등 필요 경비를 지급하되, 심사 안전의 중요성 등을 감안하여 사전에 심사 안전 검토수당 지급 가능
 - ※ 자료 사전검토 수당(100천원/회), 위원회 참석수당(150천원/일)
- 연간 소요예산 : 총 26,100천원 (의결에 필요한 최소 인원수 기준)
 - 자료 사전검토 수당 : 100천원 × 6인 × 9회 = 5,400천원
 - 위원회 참석수당 : 150천원 × 6인 × 23일 = 20,700천원

□ 월별 심사일정(안)

월 별	심 사 일 정
3월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공고 및 일자리창출사업 재심사 - 심사대상 및 심사일수 : 20개기업, 1일 - 심사내용 : '11년 1차 선정(지정)기업에 대한 재심사
4월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서울시 예비사회적기업(지역형) 지정심사 - 심사대상 및 심사일수 : 약 200개 기업, 4일 - 심사내용 : '13년 1차 지정기업에 대한 지정심사
5월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예비사회적기업 재심사 및 일자리창출사업 재심사 - 심사대상 및 심사일수 : 62개 기업, 2일 - 심사내용 : '12년 1차 선정(지정)기업에 대한 재심사
6월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사업개발비 지원대상 기업 선정심사 - 심사대상 및 심사일수 : 약 300개 기업, 5일 - 심사내용 : '13년 사업개발비 지원대상 기업 선정심사
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자치단체 지역특화사업 대상 선정심사 - 심사대상 및 심사일수 : 25개 자치구, 1일 - 심사내용 : '13년 자치단체 지역특화사업 대상 선정심사
8월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예비사회적기업 및 일자리창출사업 재심사 - 심사대상 및 심사일수 : 8개 기업, 1일 - 심사내용 : '11년 2차 선정(지정)기업에 대한 재심사
9월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일자리창출사업 지원대상 기업 선정심사 - 심사대상 및 심사일수 : 약 200개 기업, 4일 - 심사내용 : '13년 일자리창출사업 지원대상 기업 선정심사
10월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서울시 예비사회적기업(지역형) 지정심사 - 심사대상 및 심사일수 : 약 200개 기업, 4일 - 심사내용 : '13년 2차 지정기업에 대한 지정심사
11월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서울시 예비사회적기업(지역형) 재심사 - 심사대상 및 심사일수 : 34개 기업, 1일 - 심사내용 : '12년 2차 지정기업에 대한 재심사

VI

기타사항

- 재정지원사업 보조금 교부 및 지도·감독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『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』 과 『13년도 (예비)사회적 기업 재정지원사업 업무매뉴얼』 을 준용

- 기타 업무매뉴얼 및 기본계획 실행을 위한 세부적인 사항은 개별 사업 추진시 별도로 정하는 바에 의함

(예비)사회적기업 현황 및 사업별 추진실적

□ (예비)사회적기업 현황

○ 인증(지정)현황 (2012.12.31 기준)

(단위 : 개)

합계	인증사회적기업	예비사회적기업			비고
		계	지역형	부처형	
270	174 (전국 774개)	96	73	23	

※ 서울형 사회적기업 411개는 현황에서 제외

□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실적('11~'12) - 73개 기업 지정, 1,010여명 일자리 창출

○ 차수별 지정실적 (2012.12.31 기준)

(단위 : 개)

지정년도 및 일자	신청	지정	2년차 지정연장
총계	292	73	3
2011년 제1차 ('11.05.01)	13	3	2
2011년 제2차 ('11.09.15)	7	3	1
2012년 제1차 ('12.06.07)	167	35	-
2012년 제2차 ('12.12.01)	105	32	-

○ 유형별 지정실적 (2012.12.31 기준)

(단위 : 개)

구분	계	일자리제공형	서비스제공형	지역사회공헌형	혼합형	기타형
계	73	25	9	2	11	25
2012년	67	21	8	2	11	25
2011년	6	5	1	-	-	-

□ 재정지원사업 추진실적(2012.12.31 기준)

○ 총괄 (2012년)

(단위 : 개,명,백만원)

구분	계			인증			예비		
	기관수	인원수	지원금액	기관수	인원수	지원금액	기관수	인원수	지원금액
계	248	1,010	8,182	185	783	6,502	63	227	1,680
일자리 창출사업	87	942	6,133	58	715	4,908	29	227	1,225
전문인력 지원	45	68	540	45	68	540	-	-	-
사업개발비 지원	116	-	1,509	82	-	1,054	34	-	455

○ 일자리 창출사업

(단위 : 개/명)

구분	계		인증사회적기업		예비사회적기업	
	기업수	인원	기업수	인원	기업수	인원
계	87	942	58	715	29	227
2011년	35	482	29	431	6	51
2012년	52	460	29	284	23	176

○ 전문인력 지원사업

(단위 : 개/명)

신청기업 및 인원		선정기업 및 인원	
기업수	인원	기업수	인원
46	74	45	68

○ 사업개발비 지원사업

(단위 : 천원)

구분	총계		인증사회적기업		예비사회적기업			
	기업	지원금	기업	지원금	지역형		기타(고용부 등)	
					기업	지원금	기업	지원금
계	220	3,008,397	152	2,086,277	45	582,790	23	339,330
2010	34	638,842	17	389,682	12	151,830	5	97,330
2011	70	860,100	53	642,100	3	30,000	14	188,000
2012	116	1,509,455	82	1,054,495	30	400,960	4	54,000

※ 서울형 사회적기업은 현황에서 제외

○ 자치단체 지역특화사업

(단위 : 개/천원)

구분	신청	선정	미선정
자치구 수	19	10	9
금액	861,000	440,000	421,000